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86301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86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28510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최다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변론종결 2021. 8. 10.

판결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28510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이고, 사본으로 제출된 을 제1호증은 원본의 존재 및 그 원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350,000,000원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